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 안 번 호 1679 제출연월일: 2024. 7. 12.

제 출 자:정 부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잘 쓰지 아니하는 한자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고치고, 마약류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마약류관리 자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법률 제 호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라목 중 "알카로이드"를 "알칼로이드"로 하고, 같은 호 마목 중 "해독(害毒) 작용을 일으킬"을 "해를 끼칠"로 한다.

제6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마약류수출입업자: 「약사법」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의 신고를 한 자

제44조제1항제2호차목 및 카목을 각각 카목 및 타목으로 하고, 같은 호에 차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차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지정취소에 관한 적용례) 제44조제1항제2호차목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변경지정을 받은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	제2조(정의)
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
1. (생 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"마약"이란 다음 각 목의 어	2
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	
한다.	.
가. ~ 다. (생 략)	가. ~ 다. (현행과 같음)
라. 양귀비, 아편 또는 코카	라
잎에서 추출되는 모든 <u>알</u>	<u>알</u>
<u>카로이드</u> 및 그와 동일한	<u> 칼로이드</u>
화학적 합성품으로서 대	
통령령으로 정하는 것	
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규	마
정된 것 외에 그와 동일	
하게 남용되거나 <u>해독(害</u>	<u>해를 끼칠</u>
毒) 작용을 일으킬 우려가	
있는 화학적 합성품으로	
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	
것	
바. (생 략)	바. (현행과 같음)
3. ~ 9. (생 략)	3. ~ 9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	제6조(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)
① 마약류취급자가 되려는 다	①
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	

하는 자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·제2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하고,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- 1. 마약류수출입업자: 「약사 법」에 따른 수입자로서 식 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의약 품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 신고를 한 자
 - 2. ~ 5. (생략)
- ② ~ ④ (생 략)

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 지) ① 마약류취급자, 마약류취급하는 원료물질수출입 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허가관청은 이 법에 따른 허가(품목허가를 포함한다),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그 업무 또는마약류 및 원료물질 취급의 전

<u>.</u>
1. 마약류수출입업자: 「약사
법」에 따라 의약품 수입업
의 신고를 한 자
2. ~ 5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현행과 같음) 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② ~ ④ (현행과 같음) 제44조(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정

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. 다만, 국민보건에 위 해를 끼쳤거나 끼칠 우려가 있 는 마약,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경우에는 그 취급 자에게 책임질 사유가 없고 그 약품의 성분·처방 등을 변경 함으로써 그 허가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는 그 변경만을 명할 수 있다.

- 1. (생략)
- 2. 허가(품목허가를 포함한다),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하는 경우

가. ~ 자. (생 략) <신 설>

차. • 카. (생 략)

②·③ (생 략)

,
1. (현행과 같음)
2
가. ~ 자. (현행과 같음)
차.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
한 방법으로 제6조제2항
에 따른 지정 또는 변경
지정을 받은 경우
<u>카</u> .・ <u>타</u> . (현행 차목 및 카목
과 같음)
②・③ (현행과 같음)